

강의평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15.09.04

개정 2018.02.26., 2019.12.24., 2020.10.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원의 교수방법 개선과 양질의 수업풍토 조성을 통해 학생의 학습 만족도를 높이고 수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의 강의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강의평가는 정규학기에 개설된 전 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외부 현장실습과목, Pass과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조(평가시기 및 방법) ① 강의평가는 학기당 총 2회 학사시스템을 통해 시작일 기준 1주 이내로 실시하며, 학사일정 상 필요한 경우 강의평가 시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호의 강의평가 결과는 교과목에 대한 보완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제2호의 평가결과만 최종 강의평가 점수로 사용한다.<개정 2020.10.19.>

1. 중간 강의평가 : 학사일정의 8주차 시작일

2. 기말 강의평가 : 학사일정의 기말고사 시작일 7일전

② 기말 강의평가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은 성적 열람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20.10.19.>

③ 강의평가 참여 학생의 익명성을 반드시 보장한다.

④ 학사시스템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는 과목은 평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따로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평가결과 활용) ① 담당 교원은 강의분석을 통해 자신의 강의를 개선시키는 준거자료로 활용한다.

② 강의평가 결과는 교원업적평가, 강사와 비전임 교원(겸임,초빙)의 재임용, 강의 개선 및 각종 평가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24.>

③ 강의평가 결과 전체 교원(전임, 강사, 비전임) 10% 이하에 해당하는 전임 교원은 교육혁신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의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비전임 교원(겸임,초빙)의 경우 연속 2회 이상 해당할 경우 재임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해 해당교원이 강의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여 교무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시 재임용 할 수 있다.<개정 2018.02.26.><개정 2019.12.24.><개정 2020.10.19.>

제5조(평가결과의 공개) 중간 강의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기말 강의평가 결과는 학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개정 2019. 12.24.><개정 2020.10.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 적용된 것으로 보며, 제4조3항은 2015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결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